

전주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가단5889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유한회사 B

2. C

변론 종결2016. 11. 23.

판결 선고2017. 2. 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D 차량 및 E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매월 관리비로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2007. 7. 3.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수표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1. 피고 C 명의 계좌에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 12.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5조(관리권의 양도)

-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 및 위 차량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원고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피고 회사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위 제1호, 제2호를 기 위반하였을 시 피고 회사는 위 표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라. 피고 C은 2012년 10월경 F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고, F은 G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여 G이 2012. 12. 17.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 회사는 2011. 2. 11.경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속칭 '번호판')를 이용하고, 그 이용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 2,2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등록명의

이용권(번호판)을 반납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 원고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5년 8월경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4,6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없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2011. 3. 9.자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012. 4. 10.자 확인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받았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D 차량, E 차량은 피고 회사의 위·수탁 지입차량으로 번호 영업권 보호차원에서 지입 관련 대금을 다음과 같이 서약함. 피고 회사에 지입한 차량은 등록, 지입한 날로 3년 미만에 대·폐나 번호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단, 사고나 매매가 이루어졌을 시는 원고 회사와 상의 하에 결정한다. 지입관련 대금은 시세의 차이가 있을 시 시세의 기준으로 한다(예시: 지입대금 2,000만 원). 변동이 있을 때는 오르거나 내려갈 경우 그대로의 시세를 보장한다. 피고 회사는 이를 강제로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1. 12.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차량은 번호판에 대한 지입대금이 발생한 차량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금액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매매나 교체를 할 수 있으며 번호에 대한 자유로이 일을 할 수 있다. 번호판의 대금이

향후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변호판 이용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제15조의 '관리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판 이용권'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는 "원고는 위·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피고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 회사는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권을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의무 및 반환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2011. 3. 9.자 확인서, 2012. 4. 10.자 확인서 역시 원고가 금원을 지급한 시기, 금원의 액수, 반환의무 또는 반환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에게 2011. 2. 11., 2011. 3. 21.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일시는 '2011. 3. 9.', '2012. 4. 10.'로 금원 지급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확인서에는 피고 회사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기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그 작성경위 및 작성시기, 형식에 비추어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입차주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액이 확정된 보증금의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2. 1. 12.자 확인서는 이미 지급받은 변호판 대금 등을 인정해주고, 지입차주들에게 다시 변호판 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확정적인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④ 피고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3자에게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그 등록번호판을 포함한 지입차량을 매도하는 형태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위 각 확인서 역시 일정한 경우 지입차주들이 제3자에게 지입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일반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영하려는 지입차주의 수가 화물차량의 허가자동차대수보다 많아서 지입차주들은 경쟁적으로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원하므로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지입차주들에게 부여하는 지입회사들은 지입계약을 하면서 등록번호판 부여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확정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에게 일정 금원을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들이 지급하는 금원은 일정한 금원이 아닌 당시 시세에 따른 금원이고, 반환하는 경우 역시 지급한 금원 또는 일정한 금원이 아닌 시세에 따른 금원을 반환해 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권리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에게 2011. 2. 11. 2,400만 원, 2011. 3. 21. 2,2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 각 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2011. 3. 9.자 확인서, 2012. 1. 12.자 확인서, 2012. 4. 10.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시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각 확인서의 작성 주체는 피고 회사일 뿐이어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경옥